

동경지방법재판소 재판원제도 모의재판 참관 해외출장보고서

김 광 준
(파견연구위원실 실장)

I. 출장개요

1. 출장기간 : 2008. 7. 27.(일) ~ 2008. 8. 1.(금), 5박 6일

2. 출장지 : 일본 동경지방법재판소

3. 출장목적

- 일본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재판원제도 모의재판 참관
-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제도와 비교, 분석

5. 세부일정

- 7. 27.(일) : 김포 국제공항 출국, 일본 하네다 공항 입국
- 7. 28.(월) ~ 7. 31.(목) : 동경지방법재판소 모의재판 참관 및 관계자 면담
- 8. 1.(금) : 김포 국제공항 입국

II. 모의재판 내용

1. 모의재판 대상사건 개요

- 피고인 : 里見達彦(1966. 2. 9.생, 목수), 구류중
- 죄명 : 상해치사
- 공소사실의 요지 :

2007. 10. 18. 19:45경부터 18:30경 사이 노상에서 吉川誠(당시 39세)의 안

면을 주먹으로 때리고, 복부를 발로 수차례 밟는 등 폭행을 가하여 동인에게 소장장간막과열상 등을 입히고, 같은 달 19. 01:40경 연천종합병원에서 장강내출혈에 기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함

- 재판부 : 동경지방법재판소 형사 제21부
 - 재판장 : 林 正彦 부총괄재판관 외 2명
 - 재판원 : 남 4명, 여 2명 등 총 6명
- 검찰관 : 横田 希代子 외 2명
- 변호인 : 小林 充 외 3명

2. 모의재판 일정

- 7. 28.(월) 제1회 공판기일
 - 09:30 재판원들에 대한 설명 (평의실에서 진행)
 - 10:00 冒頭手續
 - 人定質問
 - 起訴狀朗讀
 - 罪狀認否
 - 10:05 검찰관 모두진술 (20분)
 - 10:25 변호인 모두진술(20분)
 - 10:45 公判前整理手續 結果提出
 - 10:50 휴정
 - 11:10 증거서류의 取調(갑 3~5, 8, 11, 11, 변 1,3)
 - 11:50 ~ 13:20 점심식사
 - 13:20 和田啓一 證人(검찰관 40분, 변호인 40분, 재판소 5분, 휴정 20분)

- 15:05 大山明 證人(검찰관 30분, 변호인 15분, 재판소 5분, 휴정 10분)
- 中間評議

○ 7. 29.(화) 제2회 공판기일

- 10:00 木村芳久 證人 (변호인 20분, 검찰관 10분)
- 10:30 피고인질문 (변호인 45분, 검찰관 45분, 휴정 10분)
- 12:10 ~ 13:40 점심식사
- 13:40 피고인질문 속개 (재판소 10분)
- 13:50 乙호증(乙 1~5)의 증거결정

乙호증의 取調(乙 6)

- 14:10 古川聖子 證人 (검찰관 15분, 변호인 5분)
- 14:30 중간평의
- 15:20 논고(25분)
- 15:45 변론(25분)
- 16:45 피고인의 최종진술
- 16:15 중간평의

○ 7. 30.(수) 제3회 공판기일

- 10:00 최종평의
- 12:00 ~ 13:00 점심식사
- 15:00 판결선고

3. 재판경과 및 결과

○ 검찰관 및 변호인의 주장

- 검찰관은 각 증인들의 진술, 진단서, 피해사진 등에 의해 기소사실의 입

증이 충분하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 징역 8년 구형

- 변호인측에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고, 사건현장에서 피고인이 벗어나 있던 시간(최장 45분)동안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을 제기하며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

○ 선고내용 : 징역 6년

(징역 5년 3명, 징역 6년 4명, 징역 5년 6월 1명, 집행유예 1명 주장)

III. 모의재판 참관 내용

1. 제1회 공판기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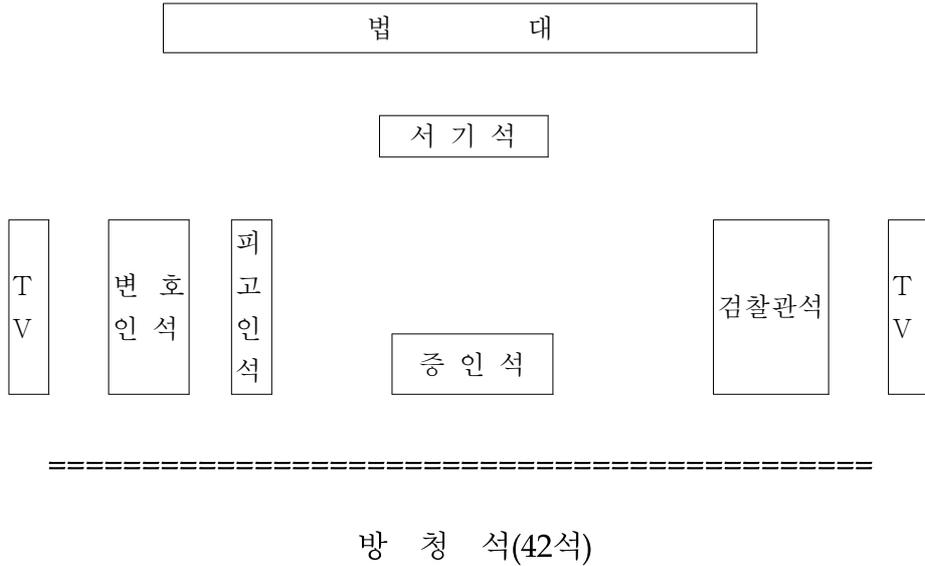
○ 7. 28.(월) 09:20, 동경지방법재판소 도착

동경지방법재판소 형사제21부 부총괄재판관 半田靖史, 平手 健太郎 재판관으로부터 기소된 사건의 내용, 향후 절차 등 재판개요에 대해 설명을 들음, 平手 健太郎 재판관이 모의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계속 옆에 앉아 재판진행과정에 대해 설명

○ 09:30 동경지방법재판소 416호 법정 입장

- 법대에는 모두 9개의 좌석이 배치되어 있었고 법대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검찰관석, 오른쪽에는 변호인석, 가운데에 서기석이 배치, 피고인은 변호인석의 바로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 증인석은 법대 정면으로 배치(검찰관석과 변호인석의 위치를 정해 놓은 규정은 없으나 통상 피고인의 좌석 뒷자리를 변호인석으로 이용한다고 함)
- 검찰관석과 변호인석 뒤쪽 벽면에는 각각 대형 벽걸이 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서기석에는 ppt 작동 시스템을 설치해 놓았음
- 10:00 개정을 앞두고 재판장이 평의실에서 사건의 개요와 향후 절차, 주의할 점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을 벽걸이 T.V.로 보여줌. 平手 재판관은 모의재판의 경우에 한해 평의하는 장면을 법정에서 보여준다고 설명

- 법정 모습



○ 개정

- 10:00 가 되자 재판장과배석재판관 2명, 재판원 6명이 입장하여 법대에 착석,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과 동시에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이채로웠음
- 재판원은 남자 4명과 여자 2명으로 연령대도 20대에서 6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성
- **모두수속 절차**에서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하고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묵비권을 고지, 최상인부 절차에서 피고인은 ① 술을 마셔서 기억이 없다 ②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있었지만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변호인은 피고인이 함께 현장에 있었던 것은 맞으나 사건현장에서 이탈하여 있을 때 제3자의 범행가능성을 제기하며 무죄를 주장
- **검찰관 모두진술**
재판관 및 재판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Board를 법정중앙으로 갖고 나와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모두진술을 진행, 검찰관 모두진술의 개념 - 사건개요 - 쟁점 순으로 각 쟁점과 주장을 나열한 후 각각 쟁점과 주장별로

입증의 방법을 설명, ① 의사인 竹田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해 사망하였고, ② 증인 和田, 大山은 피고인이 범행후 자신의 폭행사실을 털어놓는 것을 들은 바 있으며 사건 후에 피고인의 셔츠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한 점, 그 피가 피해자의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점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범인임이 입증된다고 주장

- 변호인 모두진술

검찰관과는 달리 변호인은 파워포인트의 이용없이 설명, 주된내용은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최단 24분에서 최장 45분간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난 현장에서 이탈해 있었고, ② 증인들에게 자신의 범행을 털어 놓은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증인인 和田이 실제 진범일 수 있다 ③ 피고인의 셔츠에 묻은 피는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돌보다가 묻은 것이라며, 검찰관의 주장을 순차로 제시하고 각각에 대하여 반론을 전개하는 방법으로 모두진술을 진행

- 공판전정리절차의 결과제출

본격적인 증거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판장이 공판전정리절차에서 논의된 사항, 각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중 검찰측 증거서류(甲호증) 9종, 변호인측 증거서류(乙호증) 2종, 증인 4명이 채택되었다고 설명

- 증거서류의 취조절차에서는 검찰측이 제출한 증거서류 중 채택된 증거서류 갑 3~5호증, 8호증, 11호, 12호증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을 1호증, 3호증의 각각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

- 증인심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본 직접 증인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관, 변호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반복하며 다소 지루하게 진행됨, 특히 변호인측은 증인 和田 이 진범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적극 심문하였으나 그에 관한 뚜렷한 근거는 제시하지는 못함

2. 제2회 공판기일

○ 7. 29.(화) 제2회 공판 속개(증인심문, 피고인질문, 논고 및 최후변론)

- 피고인에 대한 질문은 변호인, 검찰관, 재판소 순으로 진행
- 배심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 재판장에게 질문지를 제출하고 재판장이 배심원들을 대신하여 질문하는 우리나라의 국민참여 재판과는 달리 재판원들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직접 피고인에게 질문을 던짐. 6명의 재판원들중 4명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함
- 특이한 점은 증거서류취조, 증인심문, 피고인에 대한 질문 등 모두 사실인정에 관한 심리가 종료된 후 양형에 관한 판단을 위해 정상증인으로 피해자의 처인 古川聖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심문

- 검찰관측 논고

모두진술때와 같이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논고, ① 각 증인의 증언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그 증언에 신빙성이 있음을 부각 ② 역시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강조함으로써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음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④ 피고인의 손과 발, 셔츠에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피고인은 유죄이고, 폭행의 태양이 악질인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이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년을 구형

- 변호인측 변론

변호인측은 검찰관과는 달리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지는 않았지만 변호인 2명이 나와 남성 변호인이 검찰관의 주장내용을 열거하며 타당하냐고 물으면 여성 변호인이 그에 대해 답변하는 문답식으로 변론을 진행, ① 제3자에 의한 폭행의 가능성이 있고,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동기가 전혀 없으며 ③ 사건직후 자신이 폭행을 가했음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

2. 제3회 공판기일

○ 7. 30.(수) 최종평의 및 선고

- 재판원과 재판관들이 평의실에 모여 평의를 하는 과정을 TV로 보여줌
- 우배석 재판관 사회하에 먼저 **사실인정에 관해** 재판원들이 순차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바, 대체적으로 변호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약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였고 결국 **유죄와 무죄 비율 7:2**(재판관 3인은 모두 유죄의견)로 **유죄를 인정**
- **양형과 관련하여** 우배석 판사가 양형결정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 후 각자 순차적으로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결과 징역 6년이 4명, 징역 5년이 3명, 징역 5년 6월이 1명, 집행유예가 1명이 나와 **징역 6년을 선고하기로 결정**
- 선고와 관련하여, 무죄판결의 경우에만 자세히 그 이유를 실시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재판장은 변호인측이 무죄를 주장하는 이유를 순차적으로 열거한 뒤 각각에 대하여 반박 논거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이유, 양형의 이유를 자세히 실시**
- **모의재판이 종료된 후** 재판원, 검찰관, 변호인 모두가 참석하여 법정에서 **모의재판에 관해 의견을 나눔**, 재판원들은 이구동성으로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검찰관측의 주장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웠다고 진술하고 상대적으로 변호인측 주장은 지루하였고 따라서 집중하기가 어려웠으며 아울러 변호인측이 제3자의 범행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면서 유죄라고 생각한 논거를 밝힘

IV. 모의재판 참여 관계자 인터뷰 내용

1. 재판관(부총괄재판관 半田靖史, 平手 健太郎 재판관) 인터뷰 주요 내용

- 일본의 모의재판은 현재까지 약 200여건을 시행하였고, 모두 7개 정도

의 사전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같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모의재판을 시행**한다. 모의재판을 시행해 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재판이 시행되면 모의재판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실제재판으로 5년간 시범실시 해보는 대한민국의 방법이 적절한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시나리오는 죄명과 기소사실, 사용되는 증거, 증언의 내용 등 전체적인 윤곽은 같지만 **모두진술 및 논고, 변론의 내용, 증인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사항 등은 전적으로 검찰관과 변호인이 결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 재판원은 일반시민이, 증인 등은 재판소나 검찰청 직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재판원으로서 참여에 응하는 비율은 약 20%정도**이다. 재판원제도의 성공을 위해 다각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 **중간평의는** 재판장의 재량하에 변론종결전에 그때까지의 증거의 내용을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하는절차로 **재판원이 참가하는 형사재판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그 근거가 있고, 재판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절차**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재판원들의 이해도가 높아진다.
- **중간평의 및 최종평의에서 직업재판관들이 일반시민인 재판원들의 판단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재판관도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재판원이 문제제기하는 등 결국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서로 각자 영향을 줄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재판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 자백사건도 재판원재판 대상사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용의 낭비가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양형을 결정하는데 있어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 감각을 받아 들일 수 있기 때문에 **자백사건도 대상사건으로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 법에 의하면 재판원을 무작위로 추첨에 의해 소환하여 선정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모의재판에서는 별도로 선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오전 중에 선정절차를 끝낼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과거 재판에서는 검찰측에서 너무 많은 증거서류, 수사서류를 제출하였고 사실 그 중에는 사실인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도 많았는데, 모의재판을 시행해 보니 검찰측에서 사실인정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에 관한 증거만을 제출함으로써 오히려 사실인정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2. 검찰관(横田 希代子 외 2명) 인터뷰 주요 내용

- 검찰측에서도 모의재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매 재판마다 2명 내지 4명의 검찰관이 참여하고 있다.
- 모의재판 시나리오는 모두 정해져 있지만 대강의 내용만 결정되어 있고 기소할 것인지 여부, 입증전략 수립 등 구체적인 공판수행은 검찰관들이 실제사건과 마찬가지로 모의재판 전에 함께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 재판원제도가 시행이 되면 검찰관의 업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재판원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동경지검내에 재판원재판을 전담하는 특별공판부를 인원 11명에서 27명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 재판원 재판이 2,3일간 계속되기 때문에 재판과 관련된 사항의 비밀유지가 어렵거나 부당한 개입이 예상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원이 참가하는 형사재판에 관한 법률 제106조 이하에 비밀누설 등에 관하여 정한 것 외에는 검찰측에서 특별히 예방방지책을 강구한 바는 없다. 법에 의해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처벌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 재판원제도가 도입이 됨으로써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판

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검찰관들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수사과정에서도 조서를 작성할 때 일반 시민들을 쉽게 설득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핵심적인 사항, 요점만 작성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 모의재판에 참여하면서 실제로 재논고를 한 적은 없지만 검찰관의 논고 후에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종진술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최종변론내용이 심히 부당할 때에는 때로는 검찰관측의 재논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변호인(小林 充 외 3명) 인터뷰 주요 내용

- 금번 재판에 참여한 4명은 예전에도 함께 Team을 이루어 모의재판에 참여한 바 있다. 금번 재판에서 최후 변론에서 변호인 2명이 질문을 하고 응답을 하는 문답식으로 진행한 것은 지난 번 재판에서 재판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중간평의나 최종평의에서** 직업재판관이 일반시민인 재판원들의 심증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결국 직업 재판관의 의견이 우세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변호사 입장에서는 재판원제도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제도인 만큼 **국선변호인의 보수가 증액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현재 변호사 단체입장에서 논의중에 있다.
- 예전에 기존의 재판은 검사가 증거를 독점하였지만 **재판원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증거개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변론자료를 더욱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된 점이 변호사입장에서는 유리한 점이다. 다만, 변론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으로써 다른 사건을 맞지 못하게 돼 수입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하는 변호사들도 있다.

V. 총평

1. 모의재판의 시행과 관련

- 2009. 5. 재판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본에서는 재판소, 검찰청, 변호사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현재까지 모의재판을 200여건 이상 시행하여 제도상 문제점을 점검하는 한편, 재판소, 검찰 공히 재판원 제도를 쉽게 소개하는 홍보비디오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음
- 재판원제도의 홍보차원에서 언론사에서도 각 모의재판이 끝날 때마다 그 내용에 관하여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고 하는 바, 금번 재판이 종료한 후 가진 회의에서 재판원들도 대부분 사전에는 재판원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지만 재판원으로 참여하면서 재판원제도를 잘 이해하고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반복되는 모의재판을 통하여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촉발시키는 홍보를 하는 외에도 일반 시민들에 대해 교육을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임

2. 재판원제도에 대한 일본 법조인들의 인식

- 인터뷰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었지만 검사, 변호사들이 업무부담의 증가와 평의과정에서 직업법관의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있다고 하는 반면 직업 재판관들은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인 점에 비추어 **판사들은 재판원제도에 대해 검찰관 및 변호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는 배심원들의 판단에 권고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국민참여 재판과는 달리, 재판원들과 재판관들의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합의에 의해 사실인정을 하고 양형도 결정하고 있어 결국 판결결과에 대해 재판원들과 재판관들이 서로 권한과 책임을 나눠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됨
- 200여건의 모의재판을 통해 축적된 경험이 있어서인지 **일반 시민법관들에 대한 신뢰도가 생각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는 검

찰관과 변호인들의 공판수행능력에 따라 유·무죄 및 양형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법관들이 같은 시나리오로 재판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유·무죄 및 양형에 대한 의견에 편차가 발생하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분위기에서도 읽을 수 있었음

3.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시사점

-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검찰관측의 주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지만 검찰관, 변호인 공히 자신들의 **주장을 도해화** 하여 먼저 자신의 주장을 순차로 밝히고 그에 대한 근거를 차례 차례 열거,제시하는 방법은 일반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 나라의 검사, 변호사보다 공판을 수행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그 방법이 세련되어 보였음**. 검찰관, 변호인 공히 모두진술, 논고와 최종변론에 각각 약 30분 가량의 시간을 할애 하였지만 역량을 집중하였는데 위와 같은 변론 방식은 장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건내용에 관해 흥미를 유발하고, 재판원들의 집중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됨
- 상해치사 사건임에도 **기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단 5줄로 그야말로 법전에 나오는 상해치사의 구성요건적 사실만 기재하였을 뿐 우리나라와 같이 범행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를 폭행한 동기 등은 전혀 기재하지 않고 법정에서 모두진술을 통하여 현출을 하였는 바, 기소 시 공소사실의 작성에 이중의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공소장 **일본주의의 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됨**
- 배심원들의 재판에 대한 이해도는 궁극적으로는 최종 판결의 신뢰도 증가와 직결된 것이라고 생각함.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에서는 재판장이 적절히 중간평의를 활용함으로써 그 때까지의 쟁점을 정리하고 일반시민들의 재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었던 바, 우리의 경우에도 휴정 등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을 통해 **중간평의의 방법을 활용**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 재판장이 본격적인 증거조사 전에 공판전정리절차에서 논의, 협의된 사항을 설명하고 채택된 증거서류에 대해 증거조사가 있었는 바, 결국 첫 기일 오전 재판은 사건의 개요, 향후 재판의 절차,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증거자료의 신빙성, 그에 대한 변호인의 반박자료에 대해 조사하는데 할애 됨. 재판 당일 선고를 하여야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그와 같은 자세한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따라서 때로는 수사과정에서 진술 내용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법정진술만을 토대로 재판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경향(따라서 관련 당사자가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에도 배심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해 검토,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충분치 않음)이 있는데, 일본과 같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증거조사를 함으로써 배심원들의 재판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의 신빙성과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교, 검토해 볼 수 있음